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3 선고 2015가합564575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예진에프앤지 주식회사

변론 종결2016. 4. 5.

판결 선고2016. 5. 3.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63,162,667원 및 그 중 262,786,020원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2015. 12. 31.까지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와 피고 예진에프앤지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5. 5. 7.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예진에프앤지 주식회사는 피고 B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C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과 연대보증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	2015. 1. 8.	170,000,000	2015. 1. 14.부터2016. 1. 13.까지	하나은행	대출보증
2	2015. 4. 24.	91,800,000	2015. 4. 24.부터2016. 4. 22.까지	하나은행	대출보증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원고가 정한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위약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서를 제공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2015. 1. 15. 2억 원, 2015. 4. 24. 1억 8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2) 2015. 6. 25.경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5. 9. 18. 하나은행에게 264,422,060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피고 A로부터 1,636,040원을 회수하여 현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한 대위변제금 잔액은 262,786,020원(= 264,422,060원 - 1,636,040원)이다. 원고는 채권보전비용으로 376,110원을

지출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 A로부터 회수한 돈에 대하여 발생한 확정지연손해금은 537원이다. 그 결과 원고는 현재 피고 A에 대하여 263,162,667원(= 대위변제금 잔액 262,786,020원 + 채권보전비용 376,110원 + 확정지연손해금 537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

다. 피고 B의 재산처분행위 및 당시 자력 상태

1) 피고 B는 2014. 3. 7. C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105동 1603호를 보증금 6,000만 원, 월 차임 160만 원에 임차하였는데, 2015. 5. 7. 위 보증금 반환채권(별지 목록 기재 채권, 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라 한다)을 피고 예진에프앤지 주식회사(이하 '피고 예진에프앤지'라 한다)에게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C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피고 B의 적극재산으로는 6,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유일한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 약 2억 6,000만 원, 피고 A의 피고 예진에프앤지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채무에 관한 보증채무 약 8,700여만 원 등이어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피고 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 피고 A, B: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 피고 예진에프앤지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대한 구상금 채무자로서, 피고 B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대한 연대채무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263,162,667원(= 대위변제금 잔액 262,786,020원 + 376,110원 + 확정지연손해금 537원) 및 그 중 262,786,020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5. 9.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5. 12.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예진에프앤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지만, 이미 위 구상금 채권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던 점, 2014년 말 기준으로 피고 A의 영업이익은 3,800만 원, 당기순이익은 1,600만 원, 부채비율은 332%였던 점, 피고 A의 피고 예진에프앤지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의 규모는 2012년 700여만 원, 2013년 200여만 원 수준이었다가 2014년 9,900만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는바, 2014년부터 피고 A의 재정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B가 피고 A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실제로 위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피고 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 B가 그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피고 예진에프앤지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에게는 위와 같은 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 예진에프앤지의 선의 항변

피고 예진에프앤지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A의 피고 예진에프앤지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액이 2014년경부터 크게 증가하여 총 9,700여만 원에 달하였던 점, 그에 따라 피고 A과 피고 예진에프앤지는 2015. 3. 27. 피고 A이 위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를 2015. 4. 15. 40,000,000원, 같은 해 6. 15. 30,000,000원, 같은 해 7. 15. 27,884,350원으로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는 2015. 3. 31.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던 점, 그러나 1회 지급기일인 2015. 4. 15.경 40,000,000원만 원 중 10,000,000원만 변제되었을 뿐 그 이후로는 전혀 변제되지 않았던 점, 그러자 피고 B가 2015. 5. 7.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고 예진에프앤지에게 양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예진에프앤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피고 예진에프앤지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예진에프앤지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예진에프앤지는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C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은영

판사이장욱

판사전명재

별지